

JA교원 운영에 관한 규정

2025. 06. 01. 최초제정

2026. 01. 01.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직하고 있는 JA(Joint Appointment)교원(이하 “JA교원”이라 한다)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 및 구분) “JA(Joint Appointment)교원”이라 함은 다학제 교육과정의 편성, 운영 및 협동연구, 산학 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해 원소속(또는 본직기관) 외 1개 이상의 대학(스쿨), 학부, 학과(전공), 융합전공, 연계전공, 트랙, 마이크로디그리, 행정부서 및 부속시설, 기타 사업단 등에 공동 임용된 교원을 말하며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JA전임교원
- 2. JA비전임교원
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“JA전임교원”이란 원소속학과에 소속하면서 교육과 연구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과(융합전공 포함) 또는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(글로벌대학30, RISE 등) 실행을 위하여 대전보건대학교, 대구보건대학교, 광주보건대학교(이하 “연합대학”이라 한다) 내 2개 이상의 대학에서 겸무를 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.
- 2. “JA비전임교원”이란 본직기관에 소속된 자로서, 본 대학의 교육, 연구(학술), 산학협력(실무) 등의 분야 중 1개 이상의 분야를 전담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.
- 3. “원소속학과”란 임용 당시의 소속학과 또는 소속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변경된 학과를 말한다.
- 4. “겸무학과”란 원소속학과 외에 소속된 다른 학과를 말한다.
- 5. “겸무대학”이란 원소속대학 외에 소속된 연합대학 내 다른 대학을 말한다.
- 6. “겸무”란 JA교원이 겸무학과에서 담당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.

제2장 JA전임교원

제4조(유형) JA전임교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- 1. 지정형 : 재직중인 전임교원을 JA전임교원으로 임명하는 경우
- 2. 채용형 : JA전임교원을 전임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임용 하는 경우

제5조(소속 및 임무) ①JA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학과에 소속하며, 겸무학과 또는 겸무대학에서 겸무를 할 수 있다.

②JA전임교원은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(대학)의 교육 및 학생지도 또는 산학협력 등을 담당하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소속학과와 겸무학과(대학)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다.

제6조(지정형 JA전임교원 임용) ①재직 전임교원이 JA전임교원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학과와 겸무학과 공동으로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
②재직중인 교원이 연합대학 간 JA전임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할 때는 원소속 대학과 겸무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.

제7조(채용형 JA전임교원의 임용) ①JA전임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학과는 겸무학과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사부서에 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연합대학 간 JA전임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하는 학과는 겸무대학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③신규임용 전형 단계별 심사위원회에는 겸무학과(대학) 소속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하며, 기타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 인사관리 규정 및 전임교원 신규공개채용 전형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겸무학과 변경 및 철회) ①JA전임교원의 겸무학과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성과평가) JA전임교원의 성과평가는 원소속학과를 적용하며, 성과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교원 성과평가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장 JA비전임교원

제10조(소속 및 임무) ①JA비전임교원은 본 대학교 학과에 소속한다.

②JA비전임교원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, 산학 협력활동을 지원·촉진하며, 글로벌대학 30사업, RISE 사업 등 대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, 연구(학술), 산학협력(실무)등 분야별 업무를 담당한다.<개정 2026.01.01.>

제11조(자격) JA비전임교원의 자격은 본 대학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,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, 교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26.01.01.>

제12조(JA비전임교원의 임용) ①JA비전임교원을 신규임용 하고자 할 경우 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동의를 받아 JA비전임교원 임용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JA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재임용 할 수 있다.

③기타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,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, 교원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26.01.01.>

제13조(준용규정 및 세부사항)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②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JA(Joint Appointment) 비전임교원 임용 신청서

학 과		임용예정 학기	20 학년도 학기			
신청자 현황						
성명	담당예정과목	최종학위	산업체 경력	현직업		비고
				근무처	직위	
○○○	□□□□□□실습, □□□□실무	보건학석사	15 년	△△△△△병원	△△△팀장	
			년			
			년			
			년			
			년			
			년			
			년			
신청사유						
<p>신청 대상자에 대한 내용은 담당 예정 과목은 무엇이고, 전공 및 산업체 경력이 JA교원으로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적합한 자라는 것을 명확히 기술</p>						
<p>위와 같이 JA비전임교원 임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						
성명	서명(또는 인)	성명	서명(또는 인)	성명	서명(또는 인)	성명
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						